여신금융업권 표준내부통제기준

제정 : 2024. 3. 29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(이하'회사')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직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, 계약에 따라 회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내부통제"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한다.
- 2. "내부통제체계"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,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, 의사소통·모니터링·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.
- 3. "내부통제기준"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 무 및 고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.
- 4. "준법감시"란 내부통제의 일부분으로서 회사 임직원의 직무 수

행시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거나 법규 위반행위를 신속히 발견하도록 하는 사전적·상시적 통제 과정을 의미한다.

- 5. "준법감시체제"란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효과적인 준법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,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, 의사 소통·모니터링·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.
- 6. "준법감시인"이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 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.
- 7. "법령"이란 상법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·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.
-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,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업무분장 및 조직구조)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업무의 종류 및 성격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·개정할 때에는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.

제2장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

제5조(내부통제 조직) 회사의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, 대표이사, 준 법감시인 등으로 구성된다.

제6조(이사회) ① 이사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, 회사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. ②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

내부통제기준, 내부통제체계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7조(대표이사)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내부통제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·확립하는 등 내부통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,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에 대해 재검토하여야 한다.
- ③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적·물적 자원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- ④ 대표이사는 직접 또는 준법감시인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계·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내부통제위원회) ① 회사는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한다.

-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준법감시인, 위험 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임원을 위원으로 한다.
- ③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- 1.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
- 2.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
- 3.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
- 4. 임직원의 윤리의식·준법의식 제고 노력 등

제9조(준법감시인)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.

②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
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매뉴얼 등을 제정·시행할 수 있다.

제10조(임직원)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, 직무수행 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내규(이하 "법규"라 한다)를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조직·업무를 관리하는 임직원은 소관조직·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총괄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업무수행 시 준수절차) 회사는 임직원이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내규 등으로 문서화하고 동 내규 등의 내용이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체제 운영

제1절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

제12조(준법감시인의 임면) ① 준법감시인을 임면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의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 「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석 발생시 지체없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법감시인의 지위 및 임기)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

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.

제14조(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)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.

- 1.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
- 2.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관련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
- 3.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
- 4. 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해 경영진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 요구
- 5. 중대한 위법·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감사위원회 앞 제재 의 견 표명
- 6. 위법사항 등(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에 한한다)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
- 7. 필요시 이사회 등 모든 업무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
- 8.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
- 9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5조(준법감시부서) 회사는 준법감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과 능력 등 전문성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("준법감시부서")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6조(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)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 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, 준법감 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 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업무 이외에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.
 - 1.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
 - 2. 회사가 수행하는 본질적 업무,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
 - 3. 그 밖에 이해상충의 발생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관련 법규에서 겸직을 금지한 업무
- ③ 준법감시인이 제2항 각 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2절 준법감시체제 운영

제17조(준법감시체제의 구축) ① 회사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·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관련 법령,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시정조치
 - 2.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검토 및 정정 요구
 - 3. 법규준수, 행정지도 등 관련 임직원 교육 및 자문
 - 4. 감독당국, 검사부서 및 유관부서에 대한 협조·지원

제18조(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절차 및 방법) ①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체제를 통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준법감시인은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·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 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19조(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)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필요시 정정 요구 등을 통해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야 한다.

- 1. 정관·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
- 2. 이사회 부의사항(감사위원회 부의사항 제외)
- 3.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
- 4.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중요한 자료나 문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
- 5.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
- ②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준수, 행정지도 등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임직원 교육)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, 행정지도 등과 관련하여 정기·수시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1조(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)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점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경우 해당 부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- ②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위법·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 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- ③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2조(타 조직과의 협조)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계획 및 감사위원회의 검사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이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·조정 하는 등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4장 내부통제 관련 회사(임직원)의 준수사항

제23조(임직원의 의무)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가 제정한 윤리규범을 준수하고, 고객,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-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위반등 위법·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임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및 개인·신용정보를 누설, 제공 또는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임직원은 회사의 고유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내·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.
- ⑤ 임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사 이용자의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출신국가,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 회사 이용자를 우대, 배제,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4조(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 관련) ① 회사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- 1.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
- 2.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
- 3.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

- 4.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
- 5.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및 내부통제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
-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·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,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25조(신상품 개발등의 업무절차) ①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1. 상품 기획·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
 - 2.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
 - 3.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

제26조(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) ① 회사는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, 분석,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.

- 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, 효과성을 검토·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및 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 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 - 1.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
 - 2.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

제27조(이해상충 관리방법 및 절차) ① 회사는 업무수행 시 회사와 회

사이용자간,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,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 간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·평가하고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등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8조(광고) ① 회사는 대출 등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, 상품의 주요 내용, 대출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금융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회사상품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 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29조(부수업무 관리) 회사는 부수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평가·관리하여야 한다.

- 1. 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
- 2. 금융이용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3.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
- 4.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
제5장 보칙

제30조(고위험사무 직무분리기준) 회사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 거래에 대해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직무분 리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인력 부족이나 사안의 시 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분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통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운영할 수 있다.

제31조(정보전달체제) ① 회사는 임직원 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회사의 비전과 전략,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 및 공유되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전달 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32조(영업점 등 자체점검) ① 회사는 각 부점의 업무가 법규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부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점검 ("자체점검")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자체점검의 방법, 확인사항,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33조(내부고발제도) ① 회사는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·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34조(명령휴가)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, 실시주기, 명령휴가기간,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제35조(내부통제기준의 제·개정) ① 회사가 내부통제기준(제36조에 따라 마련된 세부지침 등은 제외한다)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, 단순한 조직체계의 변경, 기타 체제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.

제36조(세부지침 위임) 이 규정의 시행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참고 자산규모에 따른 금융회사별 변경적용 대상 조문

- 1. 【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】(제8조) 내부통제위원회
 - ▶ 자산 5조원 미만 여신금융회사는 설치의무 없음
 - *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필요
- 2. 【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대상 】 (제9조제2항) - 감사위원회

구 분	카드사	비카드여전사
5조원 이상	감사위원회 설치	감사위원회 설치
2조원 이상~5조원 미만	상근감사 설치	상근감사 설치
1천억원 이상~2조원 미만		설치의무 X
~1천억원 미만	설치의무 X	

- *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 설치 필요
- 3. 【 준법감시인의 임면 】(제12조제2항) 준법감시인 직원선임의 경우
 - ▶ 자산 5조원 미만 여신금융회사는 직원 선임 가능
 - *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임원급 준법감시인 선임 필요
- 4. 【 준법감시인의 임기 】(제13조) 임원급 준법감시인 선임
 - ▶ 자산 5조원 미만 여신금융회사는 직원 선임 가능
 - *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임원급 준법감시인 선임 필요
- 5. 【 **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** 】(제14조제5호) 감사위원회
 - ▶ 감사위원회 설치로서 2.와 동일
- 6. 【 **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전검토** 】(제19조제2호) 감사위원회
 - ▶ 감사위워회 설치로서 2.와 동일
- **7.** 【 **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** 】(제21조제2항) 감사위원회
 - ▶ 감사위원회 설치로서 2.와 동일
- 8. 【 **타 조직과의 협조** 】(제22조) 감사위원회
 - ▶ 감사위원회 설치로서 2.와 동일